

“수입·유통” 업종 FTA 활용 기업 간담회 결과

-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국 총괄기획과(044-203-4124) -

1. 회의 개요

- (일시·장소) '19. 3. 6(수), 14:00~16:00 /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
- (참석자) 산업부, 유관기관, 협·단체, 기업 등 25명 내외
 - (산업부) 통상국내정책관(회의주재), 담당 사무관 등
 - (유관기관) 소비자원, 해양수산개발원, 무역협회
 - (협회) 수입협회(원자재~완제품), 병행수입협회(소비재~완제품), 온라인쇼핑협회(유통),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등
 - (기업) 한국수입협회 및 한국병행수입협회 회원사(10개사)

2. 주요 애로·건의사항

1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방식 개선 요청

- (애로사항) 해외직구 확대에 따라 마약, 총기류 등 금지물품의 불법 반입·유통 확대 우려
 -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관리 등 필요
- (조치사항)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00% 스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(관세청)
 - 다만, 해외직구의 소비자후생 증대, 역직구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, 세계적 규범추세와 조화를 이룰 필요

2 병행수입 활성화 지원 요청

- (애로사항) 대리점을 통한 병행수입은 FTA C/O 획득이 불가*

* FTA 원산지증명서는 제조업체 또는 수출자가 발급하여, 제조업체의 해외 판매법인(한국지사) 또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요청이 곤란

- (조치사항) 대리점의 C/O 발급* 곤란은 제조업체와 현지 대리점 간의 문제로, 제도적 문제가 아닌 사인 간 문제에 해당(관세청)

* 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FTA C/O 발급 가능

3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허용 요청

- (애로사항)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구매(해외직구 등) 금지('16.5, 의료기사법), 판매업체*의 높은 가격정책 등으로 국내 렌즈 가격이 타국에 비해 비싼 편

*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은 존슨&존슨, 바슈롬 등 외국계 글로벌기업이 87% 점유

- (조치사항) 가격차이는 렌즈 비용과 서비스 비용의 분리 여부이며 온라인 구매허용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(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)

* 온라인 구매가 허용된 외국(미국, 캐나다, 호주 등)의 경우 안과의사, 검안사, 안경사의 처방전 온라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렌즈 비용과 서비스 비용(처방전 등)이 분리

*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비용(시력검사 및 제품설명 의무 등)이 렌즈비용에 포함

4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상향조정 요청

- (애로사항) 수입 물품(명품시계, 가방 등)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(현행 200만원)에 대한 상향조정 요청

- (조치사항)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현재가격이 적정*(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)

* 개별소비세 비과세 기준가격을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('15.9) 한 바 있었으나, 가격인하 등 효과가 미미하여 다시 2백만 원으로 환원('15.11)

5 영세 수입·유통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요청

- (애로사항)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영세 수입·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융자지원 등 요청

- (조치사항)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(별첨1)상 융자제의 대상 업종(별첨2)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융자신청 가능

* 단,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지원 불가

* 관련문의 :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(최승혁 사원, ☎055-751-9554)

6 EU 수출자의 인보이스상 인증수출자 문구표기 오류

- (애로사항) EU 수출자가 인보이스상에 인증수출자 문구표기 시, "EU"가 아닌 "해당 수출국가명"을 표기하여 FTA 혜택적용에 애로
- (조치사항) 현행 '한-EU FTA 원산지 규정'상 제품의 원산지는 EU 뿐만 아니라 국가코드(GR, IT 등), 국가명(Greece, England 등)을 기입해도 원산지로 인정(관세청)
 - * 한·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('11.9.21) (별첨3)

< 한-EU FTA 원산지 신고문안 예시 : 영어 본 >

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(customer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)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products are of (제품의 원산지*) preferential origin.

(장소 및 일자)

(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)

* 제품의 원산지는 EU뿐만 아니라 국가코드(GR, IT 등), 국가명(Greece, England 등) 등도 원산지로 인정

7 물가조사지 가격정보에 대한 적정성 조사 필요

- (애로사항) 건축자재 등 일부제품은 물가조사지*의 가격이 실제 유통가격보다 높게 표기되어 적정여부 등 조사 필요
 - * 한국물가정보, 유통물가, 월간 물가자료 등
- (조치사항) 물가정보 조사 후, 가격변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을 모니터링 품목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동향 및 유통·소비실태 조사·분석 등 점점 추진(소비자원)

8 건축자재에 대한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

- (애로사항) 실내공기질 관련 건축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주체 부재로 품목, 가격, 원산지, 인증 등 정보 확보의 어려움 →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
- (조치사항) '실내공기질 자료공개서비스'(inair.or.kr), 'e나라 표준인증'(standard.go.kr) 등을 통해 관련정보 제공 중(환경부, 국표원)

- 부처별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은 관련부처에서 협의·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 조치

9 수입 축산물에 대한 쿼터제 적용 등 검토 요청

- (애로사항) 축산물 수입업체 간 경쟁이 과도하여, 수입물량에 대한 쿼터 적용(예 : 일본) 등 검토 필요
- (조치사항) 수입물량에 대한 수입업체별 쿼터 배정*은 TRQ 물량만 가능할 수 있으며, 수입자유화 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수입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움(농식품부 농업정책과)

* 수입물량 쿼터는 직접적 수입제한 기능을 갖고 있어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낮은 할당관세 품목이나 관세양허시 적용물량을 한정된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

10 수입업체 대상 FTA 교육 요청

- (애로사항) 對EU 소비재·중간재 수입업체* 대상 FTA 교육 필요
 - * 영세업체일수록 EU 인증수출자번호 등 FTA 활용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
- (조치사항) 관세청, 무역협회 등 연간 FTA 교육일정 참고(별첨4)

3. 향후 계획

- 관련부서(부처·기관)와 회의결과 공유 및 기업에 피드백 조치